

서울특별시 성동구 훈령 제 호

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3항 중 “안전행정부 「보안업무규정 시행요강」 제43조”를 “행정자치부 「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」 제43조”로 한다.

제27조제4호 중 “시행요강(안전행정부)”을 “시행세칙(행정자치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규정(안전행정부)”을 “규정(행정자치부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(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대해서는 <u>안전행정부 「보안업무규정 시행요강」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	<p>제19조(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행정자치부 「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」 제43조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7조(준용) 공간정보의 보안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보안업무규정 <u>시행요강(안전행정부)</u></p> <p>5. 정보통신 보안업무 <u>규정(안전행정부)</u></p> <p>6.·7. (생략)</p>	<p>제27조(준용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-----<u>시행세칙(행정자치부)</u></p> <p>5.-----<u>규정(행정자치부)</u></p> <p>6.·7. (현행과 같음)</p>